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의 휴가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제외 및
지휘관 교체 시 직책위로 휴가 신설〉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7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0.
3. 회부연월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나 복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 효율 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휴가는 민간·공공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임. 특히 휴가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을 고려하여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이며, 군에서도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고 있어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격무에 대한 위로휴가, 공적에 대한 포상휴가 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 대한 휴가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관 등에게 그간의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 및 차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는 한편, 지휘관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과 해당 지휘관을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지휘관 등의 직책 수행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휘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지휘관과 이를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여 노고를 치하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u> <u>④ 50명 이상의 실병력을 지휘한 지휘관(대대장 및 중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교체된 경우 해당 지휘관, 해당 지휘관을 보좌하여 대대·중대의 행정·보급 관리를 담당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직책위로 휴가를 부</u>

현행	개정안
	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로 한다.

1.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미산입

□ 현행법 시행령 제9조1)에 의하면 하사 이상의 군인의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다만,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함), 현역병은 휴가기간 산정에 있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이 휴가일수에 산입됨.

□ 현역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의 휴가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의 복무형태가 ‘영내거주’인지 ‘영외거주’인지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현역병은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영내거주의 의무가 있으며

-
-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이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도 ‘일과’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휴가 시
토요일·공휴일까지 그 기간에 산입하고,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하사 이상의 군인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영내대기를 금지하고 있어 토요일과 공휴일은 ‘일과’에 해당
하지 않아 휴가기간에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영내대기 금지)

-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 개정안은 병과 간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되,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가일수에 산입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병의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공휴일을 휴가 기간에서 산정하지 않는 시혜적인 개정안이지만,
- 간부 입장에서 보자면 토요일·공휴일은 기존에도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았고,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30일에 비해 침익적인 법률 개정안²⁾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군 간부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³⁾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기에 형평성 측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병의 휴가일수 산정방법 변경(토요일·공휴일 산입 → 미산입)은 주말을 포함한 휴가 사용시 휴가 사용일수가 개정 전에 비해 줄어들기 때문⁴⁾에 결과적으로 평일의 군대 내 병의 휴가일수 증가로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휴가의 종류 등) ③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휴가를 제외한 청원휴가 중 동일한 사유의 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5. 같은 연도 내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1.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르면 연속한 금·토·일·월요일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일수는 4일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한 금·토·일·월요일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일수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2일임.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군 임무수행 시 인력공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현역병과 하사 이상의 군인 간 토요일·공휴일 휴가일수 산입 방식의 차이는 형평성 문제보다는 출퇴근 여부의 복무 특성에 따른 것이며, 병 복무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병 휴가제도를 간부와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지휘관 교체 시 지휘관 등에게 직책위로 휴가 부여

- 개정안은 50명 이상의 실병력을 지휘한 지휘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이하 “지휘관 등”이라고 함)에게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여 노고를 치하하려는 것임.
- 군 근무 특성상 격오지 근무, 철야 및 야외 근무가 빈번한 지휘관 등의 헌신에 대해 보상의 성격으로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지휘관 등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50명 이상의 실병력을 지휘한 지휘관 등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 병력 규모에 따른 법 적용 여부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보병부대의 소총중대 등은 부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병력이 많으므로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육군 기갑부대, 해군 함정부대, 공군 방공포대 등 기계·장비를 다루는 부대⁵⁾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솔 병력이 적다는 이유로 직책 위로 휴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다음으로, 현행법에서 지휘관은 ‘중대급 이상 단위 부대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음⁶⁾에도 개정안에서는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을 제외한 지휘관 등에게만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므로 계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국방부는 현재도 동법 시행령⁷⁾에 따라 지휘관이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 바, 직책 위로휴가 제도 도입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해당 부대들의 중대별 편성 병력은 50명 미만임.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휴가) ①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1.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문 의 처
02)6788-5310